

제3096호
2024. 5. 29.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규 칙]

제782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훈 령]

제18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4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82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및 서울시 자치행정과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신청인의 서류발급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대여신청시 구비 서류에서 보증인의 인감증명 요구 항목 삭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추가

[훈 령]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87호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처벌법상”을 “산안법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등 중 처벌”을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중 “조언·지도”를 각각 “지도·조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조언·지도”를 각각 “지도·조언”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전국 규모의 중구청장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를 삭제한다.

제63조 앞에 “제8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59조 앞에 “제7장 위험성평가”를 삭제한다.

제55조 앞에 “제6장 산업재해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삭제한다.

제44조 앞에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를 삭제한다.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한다.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로 한다.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제45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구청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2.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종전의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정기적으로”를 “유형 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채용 시의 교육 : 8시간 이상
- 2..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2시간 이상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1항제3호 중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용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2항 제1호다목 중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험성평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아.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차.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카.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타.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2항 제2호차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카.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타.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자.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제25조(종전의 제24조)의 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 제1항제1호 중 “일용노동자”를 “일용노동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일용노동자를 제외한다”를 “그 밖의”로 한다.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노동자 : 4시간 이상

제27조(종전의 제26조) 제1항제1호 중 “일용근로자 :”를 “일용노동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그 밖의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7조) 제1항제1호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그 밖의 노동자”로 하며, 제4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같은 항 “제26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1. 관리책임자

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35조(종전의 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장은 전기기계,·기구”를 “전기기계·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46조(종전의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52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종전의 제52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산업재해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6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6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 칙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3.9.27.) 및 시행에 따라 우리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향후 혼령 시행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 (규정 제24조제1항)
 -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반기 6시간 이상
 -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분리 (규정 제25조제1~2항)
 - 정기 안전보건교육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분리하여 교육 종류·시간·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
- 신규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규정 제26조제1항)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 개선 (규정 제27조제1항)
- 특별교육 교육시간 개선 (규정 제28조제1항)
-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규정 제30조제2항)
 -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총 6개월) → 전후 6개월(총 1년)
- 오류 문구 정비
 - 규정 제3조제1항제4호 : 중대재해처벌법상 → 산안법상
 - 규정 제11조 ~ 제30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 : 전국 규모의 중구청장 단체 → 지방자치단체 등